

The Reunified Korea Economy

統一經濟

Briefs

-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 정비의 의미와 남북 경험**

Executive Summary

□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 정비의 의미와 남북 경험

200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경제·개방 및 남북 경험과 관련된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체제가 '연성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변화이다. 경제 개혁·개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반사회주의적 경제 행위, 예를 들어 인민 계획경제 수립·시행과 관련된 책임일군의 불법적 행위, 비법적 경제관리죄, 품질 감독 질서 위반, 국가 소유 살림집의 비법적 거래, 상품 공급·판매 질서 위반, 외화 관리 질서 위반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도 나름으로의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 정비를 통해 본 북한 경제 변화를 조망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결정체계에서 정책 결정의 분권화, 경제 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등의 현상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 내부 조직간 또는 상하 행정단위간 의견 불일치 및 갈등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종의 개혁 부패(reform corruption)라고도 할 수 있는 관료 부패가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남한을 부정적인 인식 차원에서만 보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남한의 대북 교역 물자 및 지원 물자의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남한 기업인 및 비정부단체 인사들의 북한 방문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 문화·교류 등은 새로운 각도에서 남한을 인식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험 담당기구의 위상 제고를 통해 남북 관계에 있어 경험의 추동력이 강화되고, 경제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탈이념화, 실무화가 진전됨으로써 남북 경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은 북한의 변화를 감안, 새로운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상품의 대외 수출 증가를 지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되, 협력 사업이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경제 관련 주요 정비 법제 현황

1. 대내 경제 관련 법률

- (개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경제 개혁·개방 및 남북 경협과 관련된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음
- 제·개정된 주요 법률 중 2004년 이후 확인된 것만도 39개에 달함
 - 이 중 경제·과학 분야 29개, 사회분야가 6개로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남 경협 관련 정비 법제로는 「북남경제협력법」을 비롯하여 「관세법」 등이 있음
- 2002년 이후 제정된 법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2년 3월의 「상속법」과 2002년 7월의 「제품생산허가법」 등이 있음
 - 이외에도 2003년 3월의 「도시계획법」, 2003년 6월의 「컴퓨터소프트웨어법」과 「소프트웨어산업법」, 2003년 7월 「회계법」, 2003년 8월 「마약관리법」, 2004년 3월 「수로법」 등이 있음
 - 2002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법 중에는 2002년 6월 「농업법」,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사회주의 상업법」(2004. 6), 「재정법」(2004. 4)과 2003년 8월의 「화폐류통법」 등이 대표적임
- 이 중 북한 사회주의 경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법은 「개정 농업법」, 「사회주의 상업법」, 「재정법」을 비롯, 「상속법」, 「회계법」 등이 있음
 - 회계법에서는 기업평가기준을 생산량에서 이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
 - 상업법에서는 자유로운 상거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농업법에서는 작업반 우대제 폐지와 분조중심의 영농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상속법은 주택·자동차·저축 등 생활용 개인소비재의 상속 허용을 규정하고 있음

2. 대외 및 대남 경협 관련

-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은행법」(2002. 11)을 통해 합병은행 등록 자본금을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에서 2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렸음
- 2002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 관련 11건, 금강산관광지구법 관련 9건 등 총 20건의 하위규정을 제정·발표
 - 이외에도 북한 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산지명법(2003. 10)을 채택하는 등 남북 경협의 안정적 추진과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7. 6)을 제정, 남한의 「남북 교류협력법」에 상응하는 법 정비를 추진하였음
 -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총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전 민족의 이익,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상호 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협력원칙으로 규정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담당하며, ①반출입 승인, ②투자승인, ③남북 경협관련 합의서 검토, ④노동력 제공, ⑤원산지증명서 발급, ⑥기타 정부 위임 사업 등을 수행
- 북한은 또한 2005년 1월 총 21편 97장으로 구성된 관세율 편람을 발간, 항목별 세율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음
 - 관세율 대상이 되는 거래 물품 전체를 집대성해 놓고 있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고 있으며, 수입관세율과 수출 관세율을 따로 정해놓고 있음
 - 수입관세율은 국제무역상품 분류부호와 일치시키고 있는데,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국정관세율)과 특혜세율(협정관세율)로 되어 있으며, 따로 정한 관세율은 국가적인 통제품들로 특별 제정되어 있음

□ 북한 경제 관련 법 정비 배경 및 의의

1. 대내 관련 법제

가.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

- 제·개정 법률에서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이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임
-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예산제 기관을 축소하는가 하면, 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을 신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예산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예산제 기관에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예산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재정법 제30조 개정, 2004. 4)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체 재정 자립도가 가능한 기관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소, 공장 등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민족경제연합회나 아·태 등 예산 일부를 당국으로부터 조달받는 기관은 반독립채산제로, 나머지 대학이나 언론기관, 관공서 등의 기관은 완전히 정부예산으로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예산 사용 형태에 따라 기관을 구분, 예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2004. 4 「재정법」 제32조)토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요인을 축소
- 기업 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2004.4 「재정법」 제36조)하여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나. 농업 생산 활동의 효율성 창출 도모

- 북한은 「농업법」을 개정(2002. 6),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협동농장에 세부 생산계획의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등, 농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또한 농업생산의 실질적 증대를 위해 작업반 우대제를 폐지, 분조 관리제 중심의 관리운영으로 전환(「농업법」 제72조)했음
- 이와 같은 조치는 협동농장의 작업 단위인 ‘작업반우대제’의 규모가 너무 커(40~150명) 비효율이 심해진 것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작업반 우대제를 폐지하고 규모가 작은(15~25명) 분조관리제만 시행할 것을 결정, 2~3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의 농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 생산 및 분조의 단위가 줄어들수록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가족중심의 가구로 분조를 구성할 경우, 개인의 이기심이 발동되어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음
 - 노동력과 영농 기자재 보유 상태가 고르지 않은 2~3가구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됨

다. 소유 범위 및 대상의 확대

- 북한은 2002년 3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기 몇 달 전 헌법 제24조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에 따라 4장 57조에 달하는 상속법을 제정하였음
 - 상속 대상 재산(제13조)은 ① 노동에 따른 분배로 갖게 된 재산, ② 국가 또는 추가적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③ 개인부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④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같은 ‘륜전기재’, ⑤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 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임

- 상속 대상에 개인자금으로 지은 살림집(주택)은 물론, 국가가 장기 임대방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한 국가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 까지도 상속할 수 있게 정해놓고 있음
 -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 소유제도상의 큰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상속 재산의 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제한적 임에 틀림없으나, 상속법 제정은 그동안 북한이 상속을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 부정해 온 점임을 감안할 때 상속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으로 공포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향후 개인소유권을 확대하여 토지나 건물을 비롯,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향후 보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경제적 일탈 행위 방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2004년 개정 상업법에서는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6조), 영업 허가에 관한 정부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만약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것(제89조)으로 되어 있음
 - 개별 임의적 상행위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음

- 2004년 개정헌법은 기관, 기업소 및 단체의 책임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을 규정(제160조)하고 있음

- '가격사업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 없이 고치는 행위를 처벌(제170조)하고 있음
- 북한이 1999년 이후 5년 만에 형법을 대폭 개정한 이유는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제도의 일부 도입 등으로 개혁·개방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반사회주의적인 행동 및 사회주의를 기초부터 흔드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외화관리 부분이 강화된 것이 개정형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임
 - 화폐위조죄(99조), 위조화폐사용죄(100조), 증권위조죄(101조), 위조증권사용죄(102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103조), 외국화폐매매죄(104조),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죄(105조), 외환관리질서 위반질서(106조) 조항이 신설되어 있음
- 이는 개방 분위기를 타고 급증하고 있는 외화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2. 대외 및 대남 경협 관련

가. 남북 경협의 공식화 제도화

- 남북교역, 대북투자 등에서 협력 사업신청, 승인, 반출입 승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검역, 통관, 결제 등에서 필요 절차 규정 및 일원화 추진

- 남북 경협을 당국사이의 합의, 해당 법규에 기초하여 직접거래 방식으로 이행함을 규정(북남경제협력법 제7조), 당국간 합의 준수를 명문화

나. 민족내부거래 성격 강화

- 제3국 거래와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협물자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적용,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다. 대외 무역 관계의 국제화 및 질서 확립

- 관세율 편람의 상품은 국제표준분류에 접근, 8자리 숫자(digit)를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음
 - 각 수입상품별로 세부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체계는 북한 실정에 맞게 재분류
- 관세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 전반적으로 관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대북한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관세율 하향 조치는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을 지향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
 - 관세율 제정으로 국제무역에서의 수출입 관련 현실에 부응하고 세계 관세기구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향후 대외 무역 관계의 다양화·다각화에 대비
- 관세정책에 기반한 당의 무역정책을 수립,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문란해진 수출입 활동(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을 일정한 범위내로 규제하여 경제 분야의 국가 안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향후 북한 경제 및 남북 경협에의 영향

1. 북한 경제에의 파급 효과

가. 경제·사회의 연성화

○ 법률 제·개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북한 경제·사회체제의 '연성화'임

- 경제 개혁·개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反사회주의적 경제행위, 예를 들어 인민계획경제 수립·시행과 관련된 책임일군의 불법적 행위, 비법적 경제관리죄, 품질 감독 질서 위반, 국가 소유 살림집의 비법적 거래, 상품 공급·판매 질서 위반, 외화 관리 질서 위반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이나 협력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통제의 이완과 함께 북한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도 나름으로의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개정된 법률, 특히 형법과 관련된 경제관리질서의 내용 속에는 대외교역, 상거래의 확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음

나. 정책 결정의 분권화, 경제 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 신설 법률을 통해 본 북한 경제 변화를 조망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결정체계에서 정책 결정의 분권화, 경제 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등 계획경제의 '연성화' 현상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중앙계획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경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창출
-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하여 새로운 시장건물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장형태 형성 및 상행위를 활성화
- 공장·기업소들간 일부 원자재와 부품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도 구상하고 있는 등 기업소간 물자교류 강화
- 환율의 현실화,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새로운 지역 경제특구 공표 등 대외경제 개방 의지 표명 등

다. 사회적 갈등 구조의 심화

-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 내부 조직간 또는 상하 행정단위간 의견 불일치 및 갈등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후속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호전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과 물자 공급부족 현상 등 부작용이 누적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분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권력기반이 공고하기 때문에 지도부 내부의 노선갈등이 권력투쟁을 통한 북한의 정치불안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임

라. 개혁 조치의 부작용 증가

- 북한 경제의 개혁 조치는 관료부패를 더욱 조장시킬 가능성이 큼
 - 이는 일종의 개혁 부패(reform corruption)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유형의 부패가 촉진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책변화가 관료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주고 있기 때문임

- 개혁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과 그 정책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경우, 조직의 운영원리에 밝은 관료들은 이를 이용하여 부패에 간여하게 됨
 -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외국과의 접촉 창구는 대부분 관료의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비리 개연성은 개혁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임
 - 경제 개혁이 사회주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개혁인 만큼,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관료들의 신념을 약화시키게 됨으로써 이권과 관련된 부패 개입,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주의 공백은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의해 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탈피해,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조선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신임이 크게 줄어들고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동반할 것임
 - 더구나 관료 부패는 공적 영역 또는 국가영역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며, 국가권위의 잠식을 가져올 것임

- 이와 함께 남한을 부정적인 인식차원에서만 보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됨
 - 남한의 대북 교역 물자 및 지원 물자의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남한 기업인 및 비정부단체 인사들의 북한방문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남한을 인식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통합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내다보임

2. 남북 경협 효과

- 남북 경협 담당기구의 위상 제고(무역성 민경련에서 내각 소속 민경협)에 따라 남북 관계에 있어 경협의 추동력이 강화되고,
 - 경제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탈이념화, 실무화가 진전됨으로써 남북 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관세율 체제는 남북교역에 따른 품목지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남북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상품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역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많은 지장을 받았음

-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어, 북한의 외환사정이 완화될 경우, 교역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저율의 관세 적용으로 북한의 세계경제의 편입이 보다 진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수입 수요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나, 현 상태에서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협사업 추진의 가능성
 - 농업과 관광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

3. 향후 과제

- 북한의 변화를 감안, 새로운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와 관련, 2005년 이후 북한은 농업을 내치 강화의 중요한 과제이자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먼저 농업분야 협력이 가장 필요함
- 따라서, 남북이 협력하여 농업생산기반, 농기계, 농자재 공급 등 물적 토대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 정보기술 분야의 대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형 임가공 사업을 비롯,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공동개발 및 대북 위탁개발 형태를 통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실질적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협력형태가 될 것임

○ 남한은 북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북한 상품의 대외 수출 증가를 지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되, 협력 사업이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하부규정 구체화 및 대남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촉구

- 남북 경협에 대한 목적, 원칙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남 경제협력법」 하부규정의 구체화하고, 업무처리 절차 및 경제특구 관련 법령의 적용 우선 순위를 명확히 명분화해야 함
- 특히 외국인 투자보다 남북 경협 투자가 우대조치를 얻을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김영윤 현대경제연구원 자문위원(☎901-2568)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yykim@kinu.or.kr)

< 남북 경험 추이 >

		단위	2003	2004	2005. 12	2005
상업적 거래	남북 교역	만 달러	40,868	34,780	3,527	41,951
	- 일반 교역	(%)	(19.2)	(-14.9)	(11.3)	(20.7)
	- 위탁가공교역		22,367	17,179	2,099	20,978
			18,501	17,601	1,428	20,973
경제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	만 달러	2,103	8,867	2,391	27,003
	- 개성공단	(%)	(-15.8)	(321.6)	(71.6)	(202.6)
	- 금강산관광		0	4,116	1,923	17,674
			1,602	4,177	468	8,707
소 계		만 달러 (%)	42,971 (16.8)	43,647 (1.6)	5,918 (29.7)	68,954 (57.9)
비상업적	대북 지원	만 달러	27,065	25,840	1,788	36,504
	기 타	(%)	(27.0)	(-4.5)	(-42.0)	(41.2)
			2,377	215	7	117
소 계		만 달러 (%)	29,442 (7.5)	26,055 (-11.5)	1,795 (-41.8)	36,621 (51.6)
총 계		만 달러 (%)	72,413 (12.8)	69,701 (-3.7)	7,713 (0.8)	105,575 (51.4)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

		단위	2000	2004		비교
			북한	북한(A)	남한(B)	B/A(배)
인 구		천 명	22,175	22,709	48,082	2.1
경제성장률		%	1.3	2.2	4.6	-
명목 GNI		억 달러	168	208	6,810	32.8
1인당 GNI		달러	757	914	14,162	15.5
무역	무역 총액		19.7	28.6	4,783.0	167.2
	- 수출	억 달러	5.6	10.2	2,538.4	248.9
	- 수입		14.1	18.4	2,244.6	122.0
에너지	발전용량	만 kW	755	777	5,996	7.7
	발전량	억 kWh	194	206	3,421	16.6
	원유도입량	만 배럴	285	390	82,579	211.7
생산량	쌀	만 톤	142.4	180.0	500.0	2.8
	철광석	만 톤	379.3	457.9	22.6	0.05
	자동차	만 대	0.7	0.45	346.9	770.9
	비료	만 톤	53.9	43.4	361.4	8.3
SOC	철도 총연장	km	5,214	5,235	3,380	0.6
	도로 총연장	km	23,633	25,185	100,278	4.0
	항만 하역	만 톤	3,550	3,690	53,278	14.4